

노동자 및 고용주 여러분께



디지털 임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노동기준법으로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 은행 계좌 등으로 임금을 이체할 수 있게 허용해 왔습니다. 캐시리스 결제 보급 및 송금 수단의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부 자금이동업자※의 계좌로 임금 지급도 가능해집니다.

※후생노동성대신이 지정한 자금이동업자(●●Pay등)에 한합니다.
지정된 자금이동업자 목록은 지정 후에 후생노동성 웹 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후생노동성 웹 사이트

향후 흐름

2023년 4월~ 자금이동업자가 후생노동대신에게 지정 신청, 후생노동성에서 심사(수개월 소요 예정)

대신 지정 후~ 각 사업장에서 노사 협정을 체결

노사 협정 체결 후~ 노동자 개개인에게 설명하여,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디지털 임금 지급 개시

▶ 주의점

- 현금화할 수 없는 포인트나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디지털 임금 지급은 임금 지급, 수취방법의 선택지 중 한 가지입니다. 디지털 임금 지급을 도입한 사업소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현재 임금 지급, 수취 방법 변경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 노동자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은행 계좌 등으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희망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디지털 임금 지급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나 디지털 임금 지급을 강요한 경우, 고용주는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일부를 지정 자금이동업자 계좌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노동자

임금의 일부
자금이동업자 계좌
(예:5만 엔)

나머지 임금
은행 계좌 등



희망하지 않는 노동자

임금 금액
은행 계좌 등



디지털 임금 지급 희망에 앞서 여러분이 알아 두셔야 할 점

● 사전 협정체결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임금 지급을 사업소에 도입한 경우, 우선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노사협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고용주는 아래의 사항을 노동자에게 설명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수령액은 적절한 설정을

지정 자금이동업자 계좌는 '예금' 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급이나 송금에 이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한 후에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 금액을 수령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수령액은 1일 출금 상한액 이하의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 계좌의 상한액은 100만 엔 이하입니다

계좌의 상한액은 100만 엔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 등으로 자동 출금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노동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정 자금이동업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잔고 현금화도 가능합니다(월 1회는 계좌에서 출금 수수료 없음)

ATM이나 은행 계좌 등으로 출금함으로써 계좌를 현금화(출금)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월 1회는 노동자 수수료 부담 없이 지정 자금이동업자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출금 방법 및 수수료는 지정 자금이동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 계좌 잔고 환불 기간은 적어도 10년간

계좌 잔고에 대해서는 마지막 입출금 날부터 적어도 10년간은 신청 등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의 경우에 대해

● 부정 거래(의심스러운 출금 등)가 발생한 경우

계좌 탈취 등으로 지정 자금이동업자 계좌에서 부정한 출금 등이 발생한 경우, 계좌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는 손실액 전액이 보장되지만, 노동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보증에 대해서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손실 발생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상 통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정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지정 자금이동업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업자가 파산한 경우

만약 지정자금이동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보증 기관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